

펀드판매 투자권유준칙(예)

소관부서 : 상호금융마케팅지원부 (T: 3234)

[2012. 8. 22. 제정]

[2019. 5. 2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조합의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법시행령·법시행규칙·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 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본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조합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투자권유희망고객 : 투자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가. 정보제공고객 : 별지 제1호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이하“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한 일반투자자

나. 정보미제공 고객 : 본 조합이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일반투자자

2. 투자권유불원고객 : 투자권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④“포트폴리오 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⑤“파생상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1.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2. 파생결합증권(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3.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에 따른 인덱스펀드는 제외)
4.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제2호의 파생결합증권(단서에 따른 증권은 제외)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단, 집합투자재산의 50%이하로 제2호의 파생결합증권(단서 제외)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제2호의 단서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만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파생상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
5.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 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본 조합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 · 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이 본 조합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본 조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 ④ 본 조합은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6조(고객의 투자성향 분류) ① 임직원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해당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별지 제5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확인

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인 경우 3단계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인 경우 2단계로 분류 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석결과를 해당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7조(투자권유를 받지 않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임직원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임직원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임직원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 원칙]) ①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①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 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1조(투자권유절차)부터 제13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까지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절 투자자정보

- 제9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 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제①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조항은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⑤임직원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⑥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5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 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제10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제①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본 조합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임직원은 본 조합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파악 하여야 한다.
- ④제①항부터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 에는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투자권유

- 제11조(투자권유 절차) ①임직원은 본 조합이 정한 별지 제2호 적합성판단 방식에 비추어 보아 별지 제4호에 의거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본 조합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③임직원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금융투자 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④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⑤ 임직원은 다음 1호의 투자자에게 2호의 투자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의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교부대상자: 신규투자자, 고령자 및 초고령자
 - 2. 대상상품: ELS, ELF, ELT, DLS, DLF, DLT

제12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임직원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7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①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인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 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11조 제④-1항에 따른 적합성판단 방식 기준 이외에 별지 제8호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 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 한다.

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다.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 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3) 신탁계약

(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나)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5.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관계법령 등 및 본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으로서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 권유할 수 있다.

2. 임직원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자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에 3종의 투자 상담사(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 상담사)로서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임직원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투자자문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자문할 수 있는 투자상담사로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 본 조합은 임직원 등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업자로서 자문하는 경우 투자자의 보유자산 전체가 아닌 해당 투자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금액만을 기준으로 적합성 판단을 하고,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도·추가매수 또는 자산 가치 변동 등으로 포트폴리오 가중평균위험이 변동되면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 비율을 재조정 하도록 안내 또는 확인절차를 두어야 한다.

④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사 또는 계열사에 준하는 회사”(이하“계열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본 조합과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가.“유사한 펀드”란 아래 기준에 따른 펀드를 말함

(1)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 등의 펀드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것

(2)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같은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펀드일 것. 다만, 증권집합 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종류일 경우 본 조합이 같은 종류의 펀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음

나. (1)및(2)의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 중에서 회사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투자지역(국내·해외) 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하여야 함. 다만, 해당 펀드의 향후 전망, 운용 안정성, 판매전략 등을 감안 하여 달리 투자권유할 수 있음

제3절 설명의무

제15조(설명 의무) ①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 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투자설명 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 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①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 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임직원은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①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⑤임직원은 제①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임직원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①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삭제(2019.5.21.)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3.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4.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5. 삭제(2019.5.21.)
- ②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환위험 헤지를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3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의 절차를 따른다.
- ③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 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④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3.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4.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 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5.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⑤신탁업자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에 대한 위험도 분류 시, 환위험을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별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7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본 조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제3호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 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②본 조합은 제①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③본 조합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상품 중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6단계로 분류한다.
- ④임직원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본 조합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8조(투자권유창구 등의 표시) 본 조합은 영업점에 자금입출 등 통상적인 창구와 구분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창구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 ①본 조합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가 관계법령 및 이 준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합은 본 조합의 인력현황 및 판매건수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본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동결과를 펀드판매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본 조합 및 임직원은 본 조합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본 조합은 투자권유 임직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실적(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투자권유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의 준수 및 민원발생 여부 등 판매의 질적 측면을 반영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본 조합은 집합투자증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적합성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②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①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22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 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 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본 조합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당한 권유 금지

1.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 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 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 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 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 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금융 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 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본 조합이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 유도한 경우는 제외 한다.
-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다만, 조사 분석 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 한다.
5.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 아니 된다.
6.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본 조합이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본 조합이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 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 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9.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칙

제23조(점검) 본 조합은 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집합투자증권 표준판매절차) ①본 조합은 집합투자증권 세부 판매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는 집합투자증권 표준판매절차를 제정·운용 하여야 한다.

②본 조합은 임직원의 표준판매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준칙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21. 개정)

이 준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참조하여 관련부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정보 항목

대분류	질문항목	
재무적 필요성	1.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연금 등이 주 수입원임
금융 투자 상품 및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	3.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중복응답 가능)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F(ELS), ELD 등 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F(ELS), 혼합형펀드 등 ④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F(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4.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①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② 높은 수준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③ 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④ 매우 낮은 수준 - 금융상품 중 예·적금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정도
투자 성과에 대한 기대치	5. 감내할 수 있는 손실감수 수준	①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② 2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음 ③ 1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음 ④ 투자원금 보존을 추구함
	6.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가능 기간	① 3년 이상 ② 2년 이상 ~ 3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⑤ 6개월 이내

■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투자 펀드에 투자한 경험 파악

① 투자경험 없음	②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	-----------------	---------

■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 조합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12개월 동안에는 귀 조합이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들었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 조합에 통지하여야 귀 조합이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들었습니다.

· 일자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 됩니다.	

■ 투자자정보가 기존 정보와 동일한 경우

본인은 기존(최근 12개월 이내)에 제공했던 투자자정보가 현재의 투자자정보와 변동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투자자 서명/인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변경사항

투자자 성향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

 괄호 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 투자형	적극 투자형	위험 중립형	안정 추구형	안정형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등급	매우 높은위험 (1등급) 이하	다소 높은위험 (3등급) 이하	보통위험 (4등급) 이하	낮은위험 (5등급) 이하	매우 낮은위험 (6등급) 이하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임직원은 투자자가 “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거래가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적합성 판단 방식 [Scoring 기준]

■ 문항별 배점

- 1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5점, ②로 응답한 경우 2.0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5점,
④로 응답한 경우 1.0점, ⑤로 응답한 경우 0.5점
- 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5점, ②로 응답한 경우 3.5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0점
-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0점, ②로 응답한 경우 2.5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5점,
④로 응답한 경우 4.5점, ⑤로 응답한 경우 5.5점
(중복 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0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2.5점,
④로 응답한 경우 1.0점
- 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0.0점, ②로 응답한 경우 7.5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5.0점,
④로 응답한 경우 2.0점
- 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5점, ②로 응답한 경우 2.0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5점
④로 응답한 경우 1.0점, ⑤로 응답한 경우 0.5점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6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1.5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6번까지의 합이 27점인 경우, $(27\text{점} \div 31.5\text{점}) \times 100 = 85.7\text{점}$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 | | |
|-------------------|---------|
| · 43점 이하 | : 안정형 |
| · 43점 초과 ~ 55점 이하 | : 안정추구형 |
| · 55점 초과 ~ 68점 이하 | : 위험중립형 |
| · 68점 초과 ~ 81점 이하 | : 적극투자형 |
| · 81점 초과 | : 공격투자형 |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하고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별지 제3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매우 높은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 낮은위험
채 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 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동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별 실질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류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6단계로 분류

<별지 제4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분 투자성향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가능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공격투자형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집합투자증권 분류기준》

투자자 성향 유형	투자권유 가능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
공격투자형	관계없음
적극투자형	3,4,5,6등급
위험중립형	4,5,6 등급
안정추구형	5,6 등급
안정형	6 등급

<별지 제5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

- ▶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합이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파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 ▶ 또한 일반투자자가 본 농협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파생상품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회사는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여부	예 ☐	아니오 ☐	기존정보와 동일 ☐
투자권유 희망여부	예 ☐	아니오 ☐	
투자자유형	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	개인사업자 ☐

I. 투자자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 _____ 외화자산 총계 : _____
부채 총계 : _____ 외화부채 총계 : _____
연간 수출총액 : _____ 연간 수입총액 : _____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 _____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고객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	☐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	☐	☐	☐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_____	직 급 : _____	성 명 : _____	
관련경력 : _____	관련 자격 : _____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_____ (전문가 수준) :	중 : _____	하 : _____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_____	직 급 : _____	성 명 : _____	
관련경력 : _____	관련 자격 : _____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_____ (전문가 수준) :	중 : _____	하 : _____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_____		아니오 : _____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 _____		아니오 : _____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본회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 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_____ 인원수: _____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_____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 _____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KIKO 등				
이자율 스왑(Interest Rate Swap)				
구조화 이자율 스왑(Exotic FX Option)				
상품 파생(Commodity)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이 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본인이 ○○농협과 하려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본인의 거래 목적, 기타 모든 면에서 적합한 거래임과 ○○농협이 이 확인서 사본을 본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직위) _____ (담당자) _____ (인/서명)

(법인명) _____

_____농업협동조합 확인

이 확인서 내용은 _____농업협동조합이 고객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농업협동조합 지점/부서명) _____ (담당자) _____ (인/서명)

※ 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조합에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작성하는 양식이며, 만약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은 투자자로부터 투자자 확인(부적정 파생상품등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객이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본 확인서 사본에 조합이 기명 날인을 한 후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이 조사표 원본은 조합이 보관합니다.

<별지 제6호>

<투자자 확인서>

■ 부적합 금융투자상품(부적정 파생상품 등) 거래 확인

투자자 성향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

 괄호 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등급	매우 높은위험 (1등급) 이하	다소 높은위험 (3등급) 이하	보통위험 (4등급) 이하	낮은위험 (5등급) 이하	매우 낮은위험 (6등급) 이하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은 투자자가 “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거래가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별지 제7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기준>

1.(목적)이 보호기준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취약할 수 있는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상품 판매 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고령투자자의 정의)

①고령투자자란 만 70세 이상의 투자자를 의미하며, 그 중 만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 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②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한다.

③계좌명의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령투자자인 경우에는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하며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나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는 본 절차를 준용하지 않는다.

3.(투자권유 유의상품)

①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ELF, ELT / DLF, DLT 및 특별자산 펀드 기타 가격변동성이 큰 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가격변동성이 큰 상품은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정할 수 있다.

4.(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 시 사전 확인)

①판매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관리직 직원(지점장 또는 감사통할책임자)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 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 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투자자 확인서 뒷면의 관리책임자 확인 체크리스트에 기록한다.

③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를 중단하도록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은행이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사전 상담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투자자정보의 변경 여부
- 2.투자자금의 성격
- 3.투자권유과정의 적법성
- 4.주요 설명내용의 이해 여부
- 5.건강 및 인지능력

⑤관리직 직원이 자주 접촉하여 고객의 건강상태, 투자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절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가족 등 조력자 확인)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다. 단, 조력

자 확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령투자자와 조력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7.(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①초고령자에게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투자권유를 자제하고,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자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확인사항 중 반드시 한 개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의 적정성 여부를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조력자가 동석하여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여부를 확인
2. 관리책임자가 동석하여 초고령자를 조력하고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를 확인

<별지 제8호>

적합성 판단 방식 [장외파생상품]

- 만 70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 금리스왑
 - 옵션매수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70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70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합이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 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 할 수 있다.
 - 금리·통화 스왑
 - 옵션 매수·매도
 - 선도거래

구 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 인	만 70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70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 인 및 개 인 사 업 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상장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 상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예시

- 가.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나.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다. 위험 :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는 투자자성향 분류 단계 및 실제 투자자성향 분포를 감안하여 분류하며, 시장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경고' 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적합성 보고서>

* 대상상품: ELS, ELF, ELT / DLS, DLF, DLT

* 대상고객: ☐ 대상상품 가입경험 없음 ☐ 고령투자자(만70세 이상)

※ 투자권유불원 고객, 부적합 고객은 적합성 보고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 권유 상품

권유 상품		
-------	--	--

투자 권유 사유	① 수익률 우선 고려 고객이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희망하여 타 상품 대비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을 추천하였음 ② 안정성 우선 고려 고객이 상품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수익구조의 상품을 추천하였음 ③ 특정 만기 우선 고려 고객이 상품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특정 만기를 고려함에 따라 만기상환형, 조기상환형의 상품유형을 선택하고, 조기상환형의 경우 조기상환 가능성이 큰 상품을 추천하였음 ④ 기초자산 우선 고려 고객이 상품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특징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변동성, 개수, 가격 수준, 기초자산 간의 상관관계 및 향후 전망 등을 종합하여 상품을 추천하였음 ⑤ 기타(직접 입력)
핵심 유의사항	해당 상품의 이익 또는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상품구조 및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형 상품의 경우,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최대 만기까지 자금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금운용 기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직접 입력)

※ 임직원은 특정상품을 권유한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 보고서를 고객에게 교부해야함